



대한간호협회 100주년
간호백년 백년헌신

수 신 의료기관장
경 유 간호부서장
제 목 불법 진료행위 근절 및 신고 안내

-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일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자는 대한간호협회로 익명신고 바랍니다.
(QR 코드 추후 안내 예정)
 -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라,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, 간호사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·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가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
 -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라, 시술·수술·검사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사, 치과의사, 또는 한의사의 의무로, 간호사의 설명 및 수술 동의서 징구 행위
 - 대리처방, 대리기록, 대리수술, 수술 수가 입력, 채혈, 동맥혈 채혈, L-tube 및 T-tube 교환, 기관 삽관, 봉합,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, 항암제 조제 등 (붙임 1 참조)
- 이 공문을 해당기관의 모든 간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, 공문접수 확인을 위하여 간호부서의 공문접수 담당자는 이 공문을 의료기관장까지 결재 완료한 후, 공문 스캔파일 또는 문서를 **2023.5.22.(월)까지 협회로 회신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(이메일: shpark22@koreanurse.or.kr 또는 팩스 02-2260-2519)

붙임 1.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. 끝.



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

직인생략

담당 박소희 /전문위원 최훈화 /본부장 장보경 /회장 김영경

협조자

시행 정책 300-474 (2023.5.17.)

우 04615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

/www.koreanurse.or.kr

전화 (02)2260-2513 전송 (02)2260-2519

/shpark22@koreanurse.or.kr

[붙임 1]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*

- 해당 업무는 **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업무**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기에 의료현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분류	주요 업무
처방 및 기록	- 대리처방 · 의약품 처방 및 처치, 검사 처방
	- 대리기록 ·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·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· 협진의료작성 · 진단서 작성 및 전원 의뢰서 작성 ·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 · 수술기록/ 마취기록
수술	- 대리 수술
	- 수술 수가 입력
	- 수술부위 봉합(suture)
	- 수술보조(scrub아닌 1st, 2nd assist)
검사 (검체 채취, 천자)	- 채혈 · 혈액 배양검사(Blood culture) · 동맥혈 채취
	- 조직 채취
	- 천자 · 뇌척수액 천자 · 골수천자 · 복수천자
튜브 관리	- L-tube 및 T-tube 교환
	- 기관 삽관
치료 · 처치 및 검사	- 봉합(stapler)
	- 관절강내주사
	-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
약물 관리	- 항암제 조제

* 상기 분류는 보건복지부 「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」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재분류한 것임